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134호

2018. 12. 20.

건명	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맑은물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안연월일	2018. 11. 19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11. 19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생활밀착형 상수도 요금 연체료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한 일부 조항 내용 변경 필요와
 - 논산시 상수도 요금 가산금 부과 방식 개선(고정비율→일할계산)
 -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임(제2018-205호)
-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와 국민 불편 자치법규 정비 개선(이의신청 및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) 요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제목을 개선 내용과 맞도록 변경하고 수도요금 가산금 부과방식을 고정비율(체납액의 2%)에서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 시 일 할계산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개선(안 제36조)
- 나. 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 일부를 개정하고, 같은 호 제7호를 신설 (안 제40조 제1항 제7호)
- 다. 지방분권 건의과제 및 규제개혁에 따라 정비(안 제45조 제1항)
- 라. 이의신청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비(안 제50조 제1항)
- 마.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비(안 제52조)

□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수도법」 제38조(공급규정),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53조의2(수도요금 감면)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(이의제기) 등의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